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7. 2.

임실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청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등 기본 사항(안 제1조~제5조)
-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다. 청년정책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라.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심사예고 : 5일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임실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

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7.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8.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해야 하며, 이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정책업무 추진 관련 부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 기구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군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도시주택·복지·여성·농업·문화 등 분야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임실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50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4.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5.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9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

③ 청년위원회는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청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청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청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행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필요시 부서별 청년정책 관련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4장 청년정책

제12조(청년참여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기구 설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그 밖의 생활 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임

실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6. 청년정책 관련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지원
8.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의 군수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정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④ 군수는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민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에서 활동하는 19세~4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군,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3조(청년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고용 및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
5.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사업
6. 경제·금융·생활 지원 사업
7.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8. 축제 등 문화·예술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등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